

구분	주소	우편번호	팩스번호
서울지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다동, 국제빌딩)	04522	0505-182-8371
서울남부센터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건물 1층	08506	0505-182-8380
원주센터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무실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원주지사)	26387	0505-182-8379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권광로 199, 15층 (인계동, 세영빌딩)	16489	0505-182-8373
의정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7층 (의정부동, 삼성생명빌딩)	11650	0505-182-8382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	21544	0505-182-8372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초량동, 현대해상부산사옥)	48732	0505-182-8374
창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2층 (용호동, 경남무역회관)	51430	0505-182-8383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남산동, ABL대구타워)	41966	0505-182-8375
안동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67, 1층 (옥동, 시온빌딩)	36664	0505-182-8324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상무사옥 7층	61964	0505-182-8376
전주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중화산동2가, 건설회관)	54984	0505-182-8378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대한항공빌딩 5층	63198	0505-182-8384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둔산동, 한화생명빌딩)	35233	0505-182-8377
청주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가경동, 충북지방기업진흥원)	28399	0505-182-8370



대표번호 : 1666-1122



대표전화 1666-1122
적립일수 1666-1133

건설근로자와 건설사업주가 함께 **행복**해지는 **변화**의 시작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 및 공제회 주요 사업 안내

2020.5.27 시행





개정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 적용공사 및 수혜대상 확대, 직접신고제, 도급인 납부특례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20.5.27 시행)

1. 퇴직공제 의무가입 공사 범위 확대 및 공제부금일액 인상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 →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의무가입
- '20.5.27 이후 입찰공고 공사 공제부금일액 6,500원 적용

2. 퇴직공제 수혜대상 확대

- 수급요건 완화, 유족범위 개선, 소멸시효 연장으로 퇴직공제금 수혜범위 확대

3.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지급한 임금명세 확인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제 도입

-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누락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공제회에 직접 신고 가능

5. 도급인 납부특례제 도입

- 사업주의 파산, 회생 등 납부특례 사유 발생시 도급인(발주자 포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6. 벌칙규정 강화

- 퇴직공제 가입금액 명시, 성립신고, 근로일수 신고, 공제부금 납부 등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혁신 ('20.11.27 시행)

7. 전자카드제 도입

-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공사 → 전자카드제 의무 도입
- (근로자) 전자카드로 현장 출퇴근 기록 → (사업주) 근로일수 신고·공제부금 납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변화 ('21.5.27 시행)

8.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 교육·훈련, 자격 등의 종합경력을 기준에 따라 기능등급으로 환산하여 구분·관리

01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

사회안전망 강화 ('20.5.27 시행)

퇴직공제 의무가입 공사 범위 확대 및 공제부금일액 인상

[퇴직공제 의무가입 공사 범위 확대]

- (기존) 공공 3억, 민간 100억 이상 공사
- (개정)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
 - ※ 그 외 일반 건설공사 → (현재) 공공 3억, 민간 100억 이상 적용*
 - * 일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7~8월) 이후 적용 예정

[공제부금일액 인상]

- (기존) 5,000원 → (개정) 6,500원(퇴직공제금 6,200원 + 부가금 300원)
- '20.5.27 이후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
 - ※ 입찰공고건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

퇴직공제금 수혜 대상 확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 (기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60세 혹은 사망, 건설업 퇴직시 지급
- (개정) 기존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65세 혹은 사망시 지급
 - ※ 개정법 시행 전 수급요건 완화 대상자도 소급 지급

[유족 범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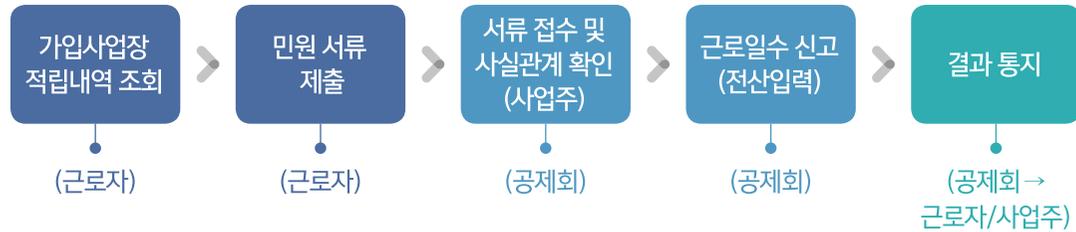
-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나이제한)와 순위를 준용하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개정) 나이와 생계유지 여부에 상관없이 유족순위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⑤ 조부모, ⑥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 연장]

- (기존) 3년 → (개정) 5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직접신고제 도입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만큼 근로일수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 가능



[신고 주체·대상·범위]

- (신고인)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한 건설근로자 ‘본인’
 - ※ 대리인 또는 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신고 불가
- (신고대상 사업장) 시공, 준공여부 관계없이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전체
- (신고범위) '20.5.27 이후 발생한 근로일수 중 사업주가 누락한 근로일수
 - ※ 신고 의무기한(근로한 다음달 15일)이 경과한 근로일수만 해당

[근로자 적립내역 확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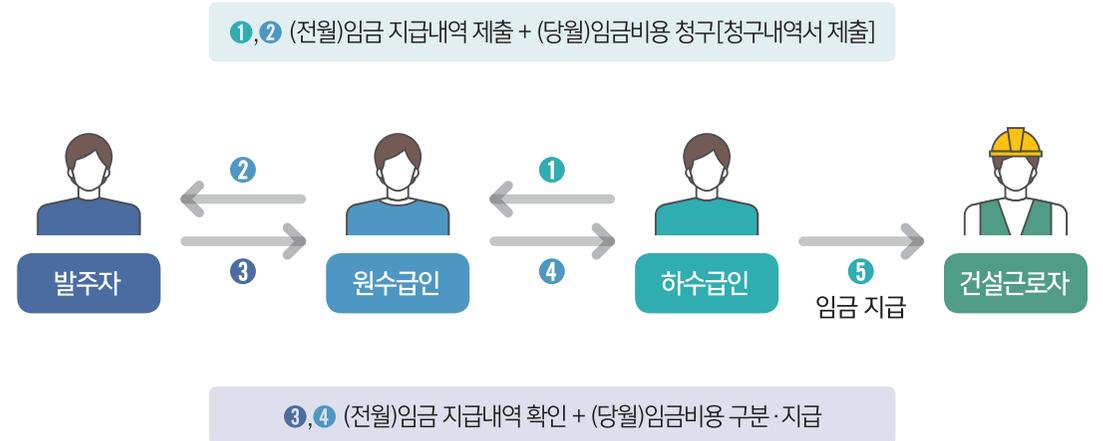
- (적립일수) 공제회 앱, 하나로 서비스(www.cwma.or.kr/hanaro) ➔ 나의 정보조회

[접수]

접수방법	• 방문 (신분증 지참), 우편, 팩스 등
접수처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공제자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 • 아래 서류 중 근로일수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기타) 국세청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우편, FAX, 이메일 접수시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간이 3개월 이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도 인정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지급한 임금명세 확인



[대상 공사]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공사

[도급인 의무]

- ① (매월) 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 확인
- ② (매월)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 지급
- ③ 미지급 확인시 고용부장관에게 통보

[수급인 의무]

- ① 매월 도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내역 제출
- ②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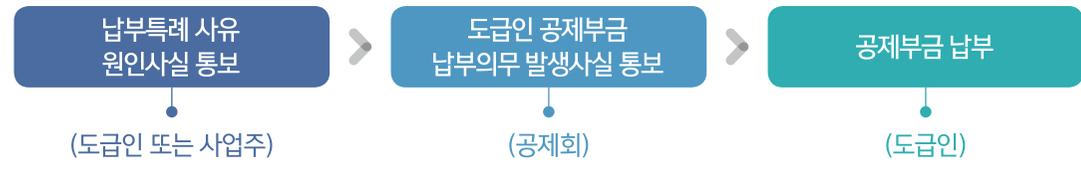
[벌칙 규정]

-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 마련

-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 발생시, 도급인이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함



[납부특례 사유]

- 도급인과 사업주의 서면 합의
- 사업주가 파산, 회생, 공동관리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도급인·납부특례 적용 사업장·납부의무 범위]

- (도급인) 발주기관(사업주가 원수급인 경우), 원수급(사업주가 하수급인 경우)
 - (적용 사업장) '20.5.27 이후 입찰공고 공사 중 납부특례 사유 발생 사업장
- * 입찰공고일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

도급인의 납부의무 범위	
• (서면합의) 서면합의 내용에 따라 도급인의 납부금액 결정	
• (파산, 회생, 공동관리 등) 퇴직공제부금비(원가반영액) 중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남은 비용	

[접수]

- 공제회 지사·센터로 공통서류와 납부특례사유별 개별 서류 각 1부 제출

접수방법	• 퇴직공제 EDI시스템(wedi.cwma.or.kr), 팩스, 우편 등	
접수처	• 공제회 지사·센터	
공통서류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발생원인 사실통보서 • 최종 도급계약서 • 최종 산출명세서 • 도급인 공제부금 지급내역 확인서류	
개별서류	서면합의	• 서면합의서
	회생, 파산, 공동관리	• 법원 결정문 또는 개시의결서
	도급인의 공제부금 미지급	• 도급인 공제부금 미지급 사실 확인 서류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기한]

- 도급인이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공제부금(공제회 통지 이전 확정된 미납금액)
 - ➔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향후 발생(신고)예정 공제부금
 - ➔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미납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급인·사업주의 역할]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 (사업주) 근로내역 신고
- (공통) 납부특례사유 발생·변동·소멸시 공제회로 통보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신설·강화)

-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강화

[신설]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 위반
- 근로일수 신고 의무 위반
- 퇴직공제 가입금액(소요비용) 명시 의무 위반
 - ➔ 3백만원 이하

[강화]

- 공제부금 납부 의무 위반
 - (기준) 1백만원 이하 ➔ (개정) 3백만원 이하
- 퇴직공제 성립신고(가입) 의무 위반
 - (기준) 3백만원 이하 ➔ (개정) 5백만원 이하
 - * '20.5.27 이후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 건부터 적용



02 투명하고 효율적인 혁신 ('20.11.27 시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 건설근로자가 현장 출퇴근 시, 소지하고 있는 '하나로 전자카드'를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 태그하여 직접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가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공사]

- 2020년 11월 27일부터 신규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퇴직공제 가입대상 전체 공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확대추진(안)

구분	'20년 11월 이전	'20년 11월 27일 이후(1단계)
공공	시범사업 확산 및 자율적 참여	100억 이상
민간	(주요 발주기관 참여유도)	300억 이상

*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전자카드를 소지하여야 함

[사업주 이행 사항]

① 단말기 설치

- 사업주가 단말기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현장에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원활히 태그할 수 있도록 적정 대수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 원가에 반영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하위법령 개정 예정이며, 단말기 업체 정보는 ecard.cwma.or.kr 공지사항 참고

② 전자카드 발급

-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자카드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	•우체국, 하나은행
발급 방법	•영업점 방문 •비대면 신청 - 카드 발급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발급('20.8월~)
지참 서류	•내국인: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증, (H-2 비자 추가 서류) 건설업 취업인정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card.cwma.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변화 ('21.5.27 시행)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개요 및 목적]

-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 교육·훈련, 자격 등을 기준에 따라 직종별 기능등급으로 산정하여 구분·관리하는 종합 경력관리 체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평생 직업으로서의 비전 제시

경력 산정에 따른 직종별 등급부여 (초, 중, 고, 특급)



[기대효과]

- (건설기능인) 기능수준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체계 마련으로 직업전망 제시
- (건설사업주) 기능인의 실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적재적소에 배치
- (정부)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촉진 및 안정적 기능인력 수급에 기여



04 법 개정사항 Q&A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

Q1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수리 공사만 퇴직공제 의무가입 공사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일반 건설공사는 가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나요?

A.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공사, 기계설비 등 일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확대될 예정('20.7~8월중)이며, 적용대상 공사금액 범위는 공공발주 공사 1억원, 민간발주공사 50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Q2

근로자가 직접신고 할 수 있는 근로일수 범위가 '20.5.27 이후에 발생한 근로일수'부터인데, '20.5.27 이전에 발생한 근로일수' 누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일수 등은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는 없으나, 대신 공제회에 「근로내역 축소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축소신고가 접수되면 공제회가 사업주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소급신고를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안내드립니다. 축소신고 접수방법은 1666-112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3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파산·회생절차 개시·공동관리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됐다면, 도급인에게 발생하는 납부의무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 범위 내에서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예) 수급인(사업주) : 파산 상태, 현재 총 미납 공제부금 : 4천만원

퇴직공제부금비 (원가반영금액)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기지급한 퇴직공제부금비	도급인 납부의무 금액
5천만원	① 2천만원 ② 5천만원	3천만원 0원

※ ①의 경우, 나머지 미납금액 1천만원 [총 미납금액(4천만원) - 도급인 납부의무금액(3천만원)]에 대한 납부의무는?
- 도급인이 계속 납부하기로 당사자간 서면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있음

05 퇴직공제사업

퇴직공제제도란?

■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의 각 현장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향후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퇴직공제 의무가입 사업장

유형	구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그 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
공공공사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공사		
민자유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민간공사	민간공사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200호(실)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200호(실)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인 방법

- 공제회 앱, 홈페이지(www.cwma.or.kr) → 가입사업장 조회
-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부착된 표지 확인



퇴직공제 적용 근로자의 범위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
- ※ 퇴직공제제도는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됨

근로일수 신고·납부

-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투입된 피공제자의 근로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미신고·미납시, 각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퇴직공제금이란?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적립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되는 금액

※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

퇴직공제금 청구 방법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서비스(www.cwma.or.kr/hanaro)” ➔ “퇴직공제금 신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252일 이상자	적립일수 252일 미만자	
		만 65세 이상 근로자	사망 근로자 유족
방문	공제회 지사·센터	○	○
	우체국	X	X
온라인	www.cwma.or.kr/hanaro 접속	○	○ (배우자만 가능)
모바일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이메일	www.cwma.or.kr 접속 → 기관소개 → 오시는길 → 지사·센터 정보 확인 가능	○	○
팩스·우편		○	○

퇴직공제금 지급

- 공제회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지급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지급

※ 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 기준이자율(월복리)을 적용

※ 장기적립 근로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을 지급

- 적립일수 기준: (30만원)1,764일 이상, (50만원)2,520일 이상, (100만원)3,780일 이상



퇴직공제금 청구 구비서류

- 퇴직사유

1	새로운 사업	5	사망
2	타업종 취업	6	고령(만 60세 이상)
3	건설업 상용직 취업	7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
4	부상·질병	8	출국(외국인근로자), 기타(농업, 학업, 취업준비 등)

구분	제출서류	참고사항
공통 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www.cwma.or.kr 접속 → 퇴직공제서비스 → 근로자 자료실 →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청구인 신분증	방문 청구 시 본인확인용 (만 60세 이상 고령 및 적립일수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자는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팩스, 우편, 이메일 청구 시(인감증명서 또는 전자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
	공인인증서	PC, 모바일 청구 시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www.cwma.or.kr/hanaro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청구사유별 구비서류 참고

※ 사망 및 만 65세 이상자 이외 사유 신청 시 적립일수 252일 이상자만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 피공제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허위근로, 허위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 취득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 및 형사 처벌 될 수 있음(부정수급 자진신고시 배액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
-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운영: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를 신고하는 경우 검토 후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문의 02-519-2092)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반납안내

- 복지수첩이란?

퇴직공제제도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공제회에서 발급한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첨부

※ 복지수첩 반납 시 수첩에 첨부된 증지만큼 공제부금 적립 가능

- 반납방법: ① 우편(등기) 발송, ②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06 대부사업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안내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신청사유(6가지) 중 해당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 상환기한이 지난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는 제외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공제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총 1천만원 한도(1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한도 내에서 대부신청 횟수 제한 없음
대부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이자 ※ 대부기간동안 퇴직공제 이자 미적용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연장불가) 일시·분할·조기상환(개인별 상환전용계좌 이용)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앱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대부가능금액 조회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 대부금 신청 → 대부가능금액 조회” 또는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1번 → 2번” 연결

[신청사유 및 구비서류]

공통 1 (온라인, 모바일 앱)공인인증 또는 카카오페이 본인인증, (방문)신분증

■ 자녀 결혼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결혼 전]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 후]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발급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결혼예정일, 혼인신고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대학생 자녀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발급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자녀의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발급일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퇴원 및 수술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대상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발급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매매 또는 전세·월세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분양 및 임대아파트도 가능 ※ 부부 공동명의로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계약금 이체 영수증 또는 (통장) 이체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아파트는 계약사실확인원(서)도 가능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 및 통지일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면책결정문도 가능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 및 통지일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변제계획인가결정문 또는 면책결정문도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하나로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하나로 홈페이지: www.cwma.or.kr/hanaro

07 복지지원사업

건강관리

1 단체보험 가입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해, 질병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혜택을 부여

- (신청자격)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
- (보장항목) 상해사망, 암진단비, 골절진단, 화상진단, 일상생활배상 등 17개 항목 보장
- (보험기간)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 (신청기간) 목표인원(6,500명) 모집 시까지
- (가입시기) 분기별(6월말, 9월말, 12월말) 가입

2 종합 건강검진

열악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조기 질병관리가 필요한 건설근로자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

- (신청자격)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검진항목) 기본 검진 / 선택검진(MRI, CT, 대장내시경, 초음파 등)
- (신청기간) 목표인원(1,300명) 모집 시까지
- (검진기관) (주)케어링크를 통해 전국 47곳 검진센터 예약 및 검진 가능

자녀교육

1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선정을 통해 장학금 지원

- (신청자격)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재학생 자녀(신입생, 휴학생,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 (선정기준) 가계소득, 성적,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
- (인원 및 금액) 400명 선정 - 1인당 100만원('20년 2학기 기준)
- (신청기간) '20.7.6 ~ 7.21(예정)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2 대학생자녀 협성장학금

협성문화재단의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장학금 선발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

※ '20년도 사업은 마감, '20.12월 초 '21년 장학금 선발에 대한 공고 예정

가족친화

1 결혼·출산 지원금 지급

건설근로자 본인의 결혼·출산을 축하하고 결혼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자격) 사유발생일(혼인 또는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 또는 출산한 건설근로자
- (지원금액) (결혼 지원금) 50만원, (출산 지원금) 30만원~50만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2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

건설근로자 부부(가족)에게 '관광상품 온라인몰(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여 국내여행 비용을 지원

- (신청자격)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신청기간) '20.7.2(목) ~ 7.22(수)
 - (모집인원) 총 957명 (478가족) 내외
 - (선정기준) 다자녀,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용) '최대 70만원 상당'의 휴가샵 포인트 지급
- ※ '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존의 「가족 힐링캠프」사업을 대체하여 진행

직업 이미지 개선

1 정부포상 추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기능인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정부포상 전수

- (신청자격)
 - (개인)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및 퇴직공제 담당자 등
 - (단체) 퇴직공제 이행 및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우수 사업장 등

- (수상내용)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 (시상) 매년 11월 22일 「건설기능인의날」기념식(예정)
 - ※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상기사항은 변동가능

2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건설근로자의 직업 이미지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건설근로자'를 주제로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 (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부문)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피공제자
 - (일반 부문) 제한 없음
- (공모주제) 건설근로자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진, 영상
- (시상)
 - (건설근로자 부문) 6점, (일반 부문) 10점
 - 고용노동부 장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공제회 이사장상 / 상금 별도
 - ※ 제11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20.7월말 발표 예정)



찾아가는 종합지원이동반

이동식 상담버스(2대)로 새벽인력시장과 건설현장을 순회하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 제도 및 고용·복지사업을 안내

- (운영방법) 새벽인력시장 및 전국 대규모 건설현장 순회
 - (새벽인력시장) 수도권 주요 새벽인력시장 방문
 - (건설현장) 대규모 건설현장 방문
 - (상담내용) 퇴직공제 적립내역, 각종 복지사업, 무료취업지원 및 기능향상지원 사업 등
- ※ 세부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소통과 참여-알림사항' 참조



08 고용지원사업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사업 안내

[사업소개]

-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구직비용(소개비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료로 실시하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건설현장 '취업' 또는 '채용' 희망자

[이용방법 및 절차]

- 전국 17개소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방문 또는 건설일드림넷 접속
- 구직신청 → 구인소개 → 취업알선(무료)

[참여문의]

- ☎ 1666-1829, 🌐 건설일드림넷 홈페이지(www.cwma.or.kr/cid) 및 모바일앱 접속

건설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안내

[사업소개]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특수성을 고려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설 직종 훈련 실시

[참여대상]

- 만 15세 이상 건설일용근로자 및 건설직종 구직신청자 등

[훈련직종]

- 조적, 타일, 목공 등 공급부족 12개 직종에 대해 기본/심화과정 운영

[훈련편성]

- 주간 20일(1일 6시간) ■ 야간 40일(1일 3시간)

[훈련비용 및 수당]

- 훈련비 무료, 확정훈련생에게 훈련수당(주: 1만6천원, 야: 1만원) 지급

[참여문의]

- ☎ 1666-1122, 🌐 건설일드림넷 홈페이지(www.cwma.or.kr/cid) 및 모바일앱 접속

「건설일드림넷」 모바일 앱의 다양한 기능



건설일드림넷·모바일 앱을 통해 지역·직종에 맞는 실시간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주변 일자리 정보 서비스]

- 구직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실시간 알선 요청

[개인 맞춤형 서비스]

- 희망직종·지역·숙련도 등 개인 맞춤정보에 따라 나에게 꼭 맞는 채용정보를 실시간 PUSH 알림을 통해 제공
- 구인·구직 신청, 알선 등 진행상태 실시간 확인

[LH 전용관 운영]

- 'LH 전용관' 운영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LH 공사현장 채용정보 제공



청년층을 위한 기능향상훈련과정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

- 특성화고와 전문건설기업을 연계하여 건설기능훈련을 교내에서 실시하고 훈련수료생을 기업의 정규직 채용

[건설 베테랑 양성훈련]

- 건설업 취업을 희망하는 전역예정 청년장병을 위해 부대 내에서 건설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제대 후 취업 연계

[거점 훈련기관 시범사업]

- 지역의 청년건설근로자를 위해 지역 내 우수 건설기능 훈련기관을 거점 훈련기관으로 선정 및 시범 운영